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7나2070015, 2017나2070022(병합) 판결

[부당이득금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망 A의 소송수계인

가. AO(변경 전 이름 N)

나. AP

다. O

라. P

원고 가 내지 라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민주, 이정호

마. AQ

바. AR

사. AS

아. AT

자. AU

차. AV

원고 마 내지 차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수

2. 망 A의 상속인 AW1)

담당변호사 안민주, 이정호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진, 이다정

변론 종결 2019. 11. 7.

판결 선고 2020. 1. 9.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511721, 548211 (병합)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한 2014. 3. 18.자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 AW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176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5. 접수 제3898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는 원고 AO, AP, O, P에게 각 83,182,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Q,

AV에게 각 83,182,675원, 원고 AR에게 22,686,184원, 원고 AS, AT, AU에게 각 15,124,1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W에게 15,124,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망 A의 청구취지

가. 선택적으로,

1)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에게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한 2014. 3. 18.자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또는,

2) 피고와 망 A 사이에 별지 1 기재 채권이 망 A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망 A에게,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5.접수 제389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949,480,098원 및 이에 대한 2017. 1.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O, AP, O, P의 청구취지

피고는,

가. 소외 D 주식회사에게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한 2014. 3. 18.자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원고들에게 각 137,362,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Q, AR, AS, AT, AU, AV의 청구취지3)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678,131,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소외 D 주식회사에게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한 2014. 3. 18.자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은 이 법원에서 위 2항 및 3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4.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를 "망 A"로, "N, O, P"을 각각 "원고 AO, 원고 O, 원고 P"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이유 제10면 제5행 "다) Z동 부동산 경매 배당금 등 113,628,360원청구 부분" 이하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다) Z동 부동산 경매 배당금 등 113,628,360원 청구 부분

(1) 2013. 5. 24.경 망 A의 S은행 예금계좌로 서울 은평구 AF, A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Z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매에 따른 배당금 112,923,098원이 입금된사실, 피고가 망 A의 S은행 예금계좌에서 2013. 5. 31., 2013. 8. 15., 2013. 8. 16. 합계 113,628,360원을 인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출금 113,628,360원 중 58,663,360원은 망 A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인출금 54,965,000원은 망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인출금 중 58,663,360원은 망 A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인출금 54,965,000원의 경우,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A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Z동 부동산 중 1/2 지분은 원래 피고의 소유인데 그 중 일부를 망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경매 배당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5호증의 기재와 원고 P이 제1심법원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Z동 부동산 중 AF 토지의 1/2 지분을 원고 AP 등으로부터 매수한 후 그 등기 명의를 원고AP, 망 A 등 앞으로 그대로 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경매 배당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려면, Z동 부동산에 대한 전체 배당금액 중 피고의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피고가 망 A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으로써 배당금 상당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망 A에게 위 나머지 인출금 54,965,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차임 수령액 168,167,125원 등 청구 부분

(1) 갑 제17, 21 내지 24호증, 을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 이후 2014. 1.부터 2016. 10.까지 별지 3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임차인들로부터 망 A가 수령하여야 할 차임 상당액을 피고 계좌로 대신 수령하거나, 새롭게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임을 수령하고, 2014. 2. 7.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중 망 A의 지분에 해당하는 8,7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망 A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A대신 수령한 차임 및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G동 부동산 H호, L호, I호, J호, K호 임차인들로부터 부가 가치세 및 관리비로 수령한 금원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제21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차인들이 지급한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의 경우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망 A 또는 임차인들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 A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피고가 별지 3 <표2> 기재와 같이 2013. 6.부터 2013. 12.까지 G동 부동산 H호에 대한 차임 4,620,000원(= 660,000원 × 7) 및 G동 부동산 M호에 대한 차임 8,050,000원(=

1,150,000원 × 7)을 피고 계좌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A와 피고는 2013. 12.까지 망 A 소유 점포와 피고 소유점포의 차임 전체를 그 소유에 관계없이 1/2씩 나누어 수령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망 A 소유인 G동 부동산 H호와 M호에 대한 차임 중 1/2을 수령한 것이 다."라고 주장한다.

갑 제21, 31호증, 을 제4, 17, 36,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일한 임차인이 망A와 피고의 예금계좌에 같은 날 같은 액수의 차임을 입금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던사실, 이처럼 같은 액수의 차임이 망 A와 피고의 계좌에 같이 입금된 점포 중에는 망A 소유의 점포뿐만 아니라 피고 소유의 점포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망 A가 작성한 차임 장부에도 오래 전부터 같은 점포에 대한 차임을 '母(망 A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AX(피고 C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반씩 나누어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3.

6.부터2013. 12.까지 G동 부동산 H호, M호에 대하여 수령한 차임은 망 A와 피고의 약정에 따라 1/2씩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차임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국, 피고는 망 A에게 별지 3 <표1> 기재와 같이 부당하게 수령한 차임 합계137,403,750원(= H호 47,740,000원 + L호 46,420,000원 + I, J호 23,525,000원 + K호10,968,750원 + 별지 2 목록 부동산 8,750,000원)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5,000,000원 중 망 A의 1/4 지분에 해당하는 8,750,000원의 합계인146,153,750원(= 137,403,750원 + 8,7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G동 점포중 L호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소송에서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에 대한 차임 수령권한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그 등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을 무효라고 보는 이상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위 점포에 관한 차임 수령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망 A에게 합계 983,484,590원(= V 부동산 손실보상금 527,365,840원 + W 대출금 255,000,000원 + Z동 부동산 경매 배당금 등 54,965,000원 + 수령한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146,153,750원)에서 피고가 2015. 9. 3. 망 A의 성년후견인에게 반환한 318,023,187원(을 제22호증)을 공제한 나머지 665,461,403원(=983,484,590원 -

318,023,1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망 A의 사망과 상속

1) 망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2. 30.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AO, AP, O, P, AQ, AV, 피고 및 망 A의 자녀로서 망 A보다 먼저 사망한 AY의 배우자인 원고 AR, AY의 자녀들인 원고 AS, AT, AU, AW가 아래와 같이 망 A를 상속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상속내역표]

지위		이름		지분	청구 내용
원고 소송수계인	자	AO		1/8	채권양도 무효 통지, 금전 지급
		AP		1/8	
		O		1/8	
		P		1/8	
		AQ		1/8	
		AV		1/8	
	자부	(망 AY→)	AR	3/88	
	손		AS	2/88	
	손		AT	2/88	
	손		AU	2/88	
손	AW		2/88		
원고 상속인	손				채권양도 무효 통지, 금전 지급, 등기 말소 ⁵⁾
피고	자	C		1/8	상속에 따른 당사자 지위의 혼동으로 소송 종료

2) 따라서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한 2014. 3. 18.자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 AW에게 별지 2 목록 부동산중 1/176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5. 접수 제389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6).

또한 피고는 망 A를 상속한 원고 AO, AP, O, P, AQ, AV에게 각 83,182,675원(=665,461,403원 $\times$ 1/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원고 AR에게 22,686,184원(=665,461,403원 $\times$ 3/88), 원고 AS, AT, AU, AW에게 각 15,124,122원(= 665,461,403원 $\times$ 2/8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 AO, AP, O, P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1.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Q, AR, AS, AT, AU, AV에 대하여는 위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2017. 1.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W에 대하여는 망 A의 청구취지에 따라 2017. 1.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설범식, 판사 이재욱, 판사 김길량

1) 원고 AW는 망 A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망 A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2) 망 A의 소송대리인이 상속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3) 위 원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신청(2018나2069982)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소송수계신청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4) 한편 망 A는, "피고가 2014. 10. 10.에도 M호 점포 임차인에게 망 A 명의로 새로 개설한 AI계좌로 차임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여 차임 2,398,000원을 수령한 후, 2014. 10. 22. 합계 2,383,000원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원고 소송수계인들은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말소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나, 원고 AW는 따로 소송수계 및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망 A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망 A의 1차 유언 공정증서에 따르면,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은 피고의 아들인 AZ에게 유증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대법원 2003. 5. 27.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위 부동산은 일단 망 A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 AW에게 그상속지분에 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